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www.ekara.org](http://www.ekara.org)

 **KARA** Korea Animal  
Rights Activists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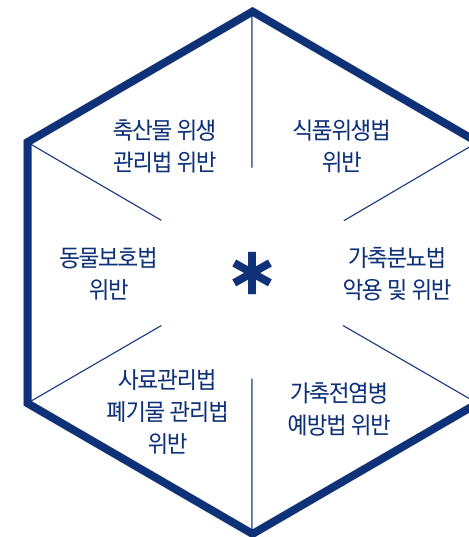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만 지켜도 이미 개식용은 불법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발행처**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대표 임순례  
**발행일** 2016. 06. 15  
**집필** 전진경, 김현지  
**법률자문 및 감수** 서국화

**웹사이트** www.ekara.org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화** 02.3482.0999  
**팩스** 02.3482.8835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식용 불법화가 될 때까지 쉽 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개의 사육, 도살, 지육 및 보신탕 판매까지 중복 누적되는 위법행위 일람표

① 인도적인 안락사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수의사회 안락사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개의 경우 바비탈염류(펜토바비탈) 등 안락사 약제의 정맥주사에 의한 안락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의 안락사에서 보조적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들은 바비탈 염류의 정맥 이외 경로 주사,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가스 과다흡입, 그리고 총살이 있으나 이중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중독과 총살은 일상적 안락사 방법으로 권장되지 않는다(AVMA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 2013 Edition, p. 99, Appendix I - 종별 안락사 방법과 약제).

② 개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라는 사실은 개도살 및 개고기 유통·판매가 이 법에 의해 아무런 법적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시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아 해당 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 반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도살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있을 수 없는 허가되지 않은 도살에 해당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최고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계	위법행위
사육	개에게 급여할 음식쓰레기의 무단처리
	개에게 음식쓰레기를 급여
도살	불법 개농장의 분뇨 발생과 피해
	개를 먹기 위해 도살
판매	전기감전의 방법으로 개를 도살
	개를 허가되지 아니한 도살장에서 도살
판매	개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살
	재래시장에서 개의 지육을 전시 판매
	보신탕집에서 출처 불명 개의 지육을 이용한 보신탕을 판매

주요 관련법	주요 위반사항	처벌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 제25조 ③항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운반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개농장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제공	폐기물 관리법 제64, 65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료관리법 제14조 ①항 및 ②항	허가 없이 음식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개에게 급여	사료관리법 제3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법 제11조	불법으로 난립된 개농장의 분뇨로 인한 환경 위해	가축분뇨법 제49조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 ①항 4호	개도살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 ①항 1호	도구·약물 또는 열·전기·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마저 법적 처벌의 대상인 만큼 당연히 상기 방법에 의한 도살 행위는 위법이며 국제적으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도살로 금지 ①	동물보호법 제4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①항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살, 식육으로의 유통이 불가능' 한 동물로서 허가 받은 도살장이 존재할 수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동물보호법 제10조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안되는데 개도살의 인도적인 방법은 약물 주사 외에는 없으므로 모든 식용 목적 개도살은 잔인한 도살	10조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으나 잔인한 도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①항 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 허용은 고시로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한하며 개는 해당사항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4, 5조	• 불결한 불법도축과 지육 전시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예) 개의 지육이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기동물이나 개농장에서 병든 동물들이 도살돼 판매될 가능성을 배제 못하여 병든 동물의 고기 등의 판매 금지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44조 ①항 1호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행위  
중복누적도





법규 안내집 발간  
취지



개식용과 거기서 야기되는 동물학대 등 사육부터 도살 그리고 보신탕으로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목격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어할 법적인 기반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002년 ‘누렁이 영혼 위령제’ 를 시작으로 2006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식용 반대 버스광고를 실시했으며, 2009년에는 동물보호 무크지 숨 2집 <반려동물, 그 아름답고도 오랜 우정>에서 개식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다른 한편 서천 보신탕 축제 반대 활동(2003), 2005년 국무조정실의 사실상의 개식용 합법화였던 식용개 위생관리 정책 폐기 활동(2005), 서오릉 개도살자 고발(2014) 그리고 최근에는 김천의 대규모 개농장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는 등 법적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4년 ‘개식용 합법화의 부당성’ 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옐로독 필드 조사 자료집과 조사 영상을 발표했고, 2012년에는 ‘개식용 산업 실태 조사와 금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를 발간하는 등 개농장과 개도살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외의 다른 동물보호 단체들과 자원활동가들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학대 행위로서 개식용을 지목하게 되었고, 나날이 더 많은 시민들이 개식용이 야기하는 구체적 학대 사례를 고발하며 실질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 담당자 그리고 경찰과 사법기관의 개식용 문제 해결 의지는 시민들의 빠른 의식변화와 구체적인 법적·행정적·제도적 실행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법과 행정을 적극 집행해야 할 담당자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개식용과 거기서 야기되는 동물학대를 제어할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다’ 고 항변한다. 1992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근 25년이 경과되는 동안 동물보호법 제정의 최초 사유였으며 현재 동물보호법의 발전을 가장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개식용 문제는 결국 아무런 해결의 기미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말 개식용과 거기서 야기되는 동물학대 등 사육부터 도살 그리고 보신탕으로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목격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어할 법적인 기반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법체계가 대체 개식용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혹시 법적인 장치가 엄연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잘못된 법 해석이나 집행 태만으로 일관해와 이제는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연히 오랜 세월(대체 언제까지?)이 지나면 개식용은 없어질 것이라는 극도의 무책임한 태도로 개식용 문제를 정면 응시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잘못된 법 해석과 집행 태만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미 개식용 그 자체가 반려동물인 개의 구조적 학대의 주범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반려동물 복지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규 자료집은 개의 사육과 도살, 식품으로의 유통과정과 관련된 대한민국 법과 고시를 조사하여 개를 키워 도살하고 보신탕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연루되는 각종 동물학대 행위와 법규 위반 행위를 드러내고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동물보호법부터 반려동물로서의 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폐기물 관리법까지 주요 법률 위반 행위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우리들 바로 곁에서 가족으로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개’가 자의적으로 ‘식용개’라고 정의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온갖 불법과 법적 태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무리 극악한 사육과 도살의 대상이 되더라도 개를 ‘먹기 위함’이라는 단서만 붙이면 법이 마비되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여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변명이 정당한지를 검증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이 오히려 ‘사회적 통념’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불법을 방임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개식용과 연루되어 발생하는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선 행정 담당자,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 ‘정말 이게 최선인지를’ 이 자료집을 통해 묻고자 한다.



이 자료집은 개식용 종식이라는 목표로 가기 위해 현행 법규를 고찰하고, 이미 마련된 법적 장치가 있으면 이를 밝혀 알리고 허점이 있다면 드러내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선을 다해 관련 법규를 조사하고 법률간 연관성을 찾아 개식용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은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주력하였다.

우리는 개식용과 관련된 법규로서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관련 고시들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를 다른 축산동물들과 구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개식용은 불법이라고 한마디로 단언하지만 않을 뿐 개식용을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 정규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관련법들을 종합하면 개식용은 최소한 여러가지의 불법 행위와 연루되어 있거나 총체적으로 여러 불법 행위가 합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식용은 여러 단계의 불법행위가 조합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일부 법률들은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법의 전체적 맥락과 비껴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지지하며 법의 일관성을 스스로 해치고 있기도 했다.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개농장 합법화의 근거로 악용되는 법률도 있었다.

이 자료집 하나로 답답한 현실이 당장 180°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그러나 ‘개식용 문제를 제어하고 처벌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그간의 안일한 인식을 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 자료집이 개식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 및 법규 위반 행위를 현행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소한 불법을 합법이라 단정 지으며, 그동안 불법이 만연한 개농장 등에 대해 어떠한 행정권도 발동하지 않았던 일선 공무원들이 방임적 직무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결국 식용 목적으로의 개 사육과 도살을 원천봉쇄하는 개식용 금지법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개식용 종식으로 가는 길에 작은 이정표 하나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더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이 법규집을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게 보완하여 주기를 바라며, 오류가 있다면 즉시 지적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개의 사육, 도살, 지육 및 보신탕 판매까지 중복 누적되는 위법행위 일람표	06
발간 계기	10
발간 목적	12
자료집 용도와 한계	13
개식용, 무법 아닌 불법! 정부의 무위가 가져온 파국	16

## 동물보호법 위반

1. 현황	19
2. 모든 개도살은 잔인한 방법의 도살로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	19
2-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19
2-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21
2-3)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21
3. 모든 개도살은 도살의 ‘근거’가 없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 도살로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	22
4. 결론	22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잘못된 민원 대응 사례 • 인천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의 민원 사례	24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 식육으로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 ‘개’

1. 현황	27
2.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살, 식육으로의 유통이 불가능’ 한 동물	27
3. 결론	30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잘못된 민원 대응 사례 • 경기도 ○○시 동물보호감시원의 민원 사례	30

## 식품위생법 위반

1. 현황	33
2.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조 위반	34
2-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34
2-2) 식품위생법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35
3.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추가에 따른 추가 법률 위반 (2016년8월4일시행)	36
4. 결론	3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악용

1. 현황	39
2. 개가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이 된 이유	39
3. 법적 실효성의 문제	41
4. 결론	43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방역의 총체적 와해와 위험 부과

1. 현황	45
2. ‘개’를 닭, 돼지와 함께 대규모 살처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한국	46
2-1)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개’	46
2-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개’의 집단 사육	47
3. 결론	50

##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영업 이익 극대화

1. 현황	53
2. 폐기물 관리법 위반 •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와 운반자에 대한 적용 규정	53
3. 사료관리법 위반 •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먹이는 개농장주	56
4. 결론	60
* 지방자치단체 담당관의 잘못된 민원 대응 사례 • 경북 ○○시 축산환경과 공무원의 민원 사례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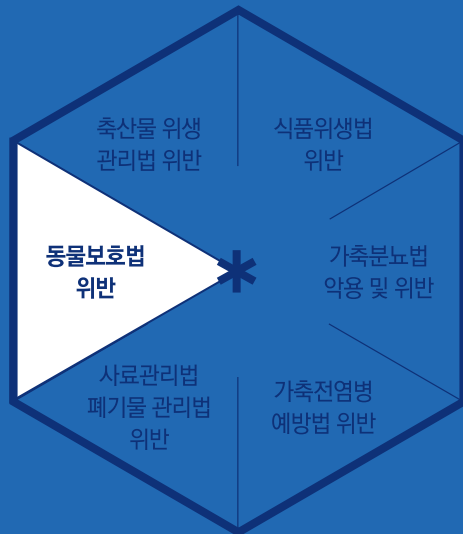
## 개식용, 무법 아닌 불법! 정부의 무위가 가져온 파국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다. 대한민국 법에서 개고기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식용 개농장과 개도살, 그리고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 등은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 저촉된다. 비록 '개식용 금지' 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을지언정 개식용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현실의 여러 행위들이 명백히 불법이고 따라서 개식용은 절대 '합법'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불법 행위는 개고기를 먹는다는 관습적 판단으로 여러 위법적 요소들이 아예 단속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단속을 한다 해도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 무위는 한국에서 소규모 불법 개농장의 난립에 더하여 한 농장에서 1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개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 보신탕이 상업적으로 판매되기까지, 동물학대적인 환경에서의 사육, 도살, 식육으로서 유통되는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체계가 없다. 반면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된다. 아무런 제재 없이 성행하고 있는 개농장, 보신탕집 등이 사실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에 따른 행정청의 올바른 법적용이 필요한 때이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 동물보호법 위반

## 1. 현황

[목적자 증언]

"모란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을 봤다. 우선 죽일 개의 몸에 물을 한바가지 끼얹더라. 그런 후 몸부림 치는 개의 몸이나 머리를 발로 짓밟고 개의 입이나 심지어 눈에 전기도살봉을 대어서 감전시킨다. 개는 30여초간 비명을 지르며 경련했고, 끝까지 못봤지만 절대 한번에 죽지 않았다."

- 사면이 뚫린 철망 뜬장, 혹은 비닐하우스 내 뜬장, 상단에 비닐을 덮은 형태로 대규모 사육
- 비인도적 방법으로 운송하며, 도살장 앞 공간에서 대중 앞에 산 채로 전시하고 도살될 개를 골라 바로 도살
- 대부분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직접 만든 전기도살 기구로 감전사 또는 기절시킨 후 생체를 분해

## 2. 모든 개도살은 잔인한 방법의 도살로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

### 2-1)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개농장 또는 개시장에서 자행되는 개 도살은 설사 목을 매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된다. 개를 전기감전으로 기절 또는 도살시키는 행위는 전혀 검증된 바 없는 잔인한 도살행위이다. 한국 동물보호법은 유기되어 국가가 소유권을 갖게 된 개의 경우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개의 안락사 방법으로 국제 ❶ 국내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약물 주사에 의한 것 뿐이며 그 외의 방법은 연구되어 정립된 바가 없다 ❷.

❶ 인도적인 안락사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수의사회 안락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개의 경우 바비탈염류(펜토바비탈) 등 안락사 약제의 정맥주사에 의한 안락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의 안락사에서 보조적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들은 바비탈 염류의 정맥 이외 경로 주사,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가스 과다흡입, 그리고 총살이 있으나 이중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증독과 총살은 일상적 안락사 방법으로 권장되지 않는다(AVMA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 2013 Edition, p. 99, Appendix 1 - 종별 안락사 방법과 약제).

❷ 이와 관련 명보영 수의사는 “통증과 도축시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수의학적으로 증명된 인도적인 개의 도살 방법은 약물을 통한 안락사 뿐인데, 섭취하는 동물을 약물로 도축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다. 학계에서도 소비국이 없어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개식용산업 실태조사와 금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2, p 96~99, KARA).

미국 뉴욕주는 개과 동물인 모피용 사육 여우의 전기도살을 잔인한 도살로 규정하여 법으로 금지(2007년)했으며, 영국은 2003년 모피 동물 사육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기 이전에 이미 여우의 전기도살을 금지하고 안락사 약제의 주사를 통한 도살만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개과 동물인 여우의 전기도살이 국제적으로 잔인한 도살로 금지되고 있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같은 개과 동물인 ‘개’를 임의로 전기도살 시키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는 행위와 대조됨은 물론, 전기도살 행위가 잔인한 도살 행위임을 방증한다.



대규모 개도살에는 보통 ‘전기봉’이 이용되는데, 개의 신체에 전기봉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입이나 항문에 전기봉을 쏘서 넣어 도살한다. 이때 개는 즉시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사력을 다하여 전기봉을 무는데 이로 인해 개도살에 사용된 전기봉에는 개의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또한 목격자 증언에서도 나타나듯, 개도살은 모란시장 등 사람들에게 공개된 노상의 공간에서 동종인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카라가 고발하였던 ‘서오릉 도살자’ 역시 차폐시설이 없는 좁은 공간에 수 마리의 개를 데리고 들어가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도살하였다. 동종의 죽음을 목격하는 경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호 생략)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④ 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 2-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이다. 또한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는데 동물을 죽이는 개도살이 합법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전기를 이용한 상해 행위가 금지되는데 개도살에 흔히 쓰이는 전기봉을 통한 개도살이 합법이 될 수 있겠는가?

### 2-3)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항은 모든 동물은, 심지어 그 도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할 수 없도록 명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는 명백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개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개 도살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 3. 모든 개도살은 도살의 ‘근거’가 없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 도살로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제1호부터 3호까지 금지되는 동물 살해 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이거나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개를 ‘먹기 위하여’ 죽이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식육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 4. 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도살 행위는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거한 동물학대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 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도살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방치되고 넘쳐 최악의 법적·도덕적 태만 상태에 있다. 개도살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처벌해야 할 근거 법령인 동물보호법은 행정 주체와 법집행 기관의 무위에 의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 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제46조(벌칙)

①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잘못된 민원 대응 사례

- 인천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의 민원 사례



제목 개 도살이 합법이라는 ○○구청 동물보호감시원 분의 주장에 대한 민원  
날짜 2016-03-10  
작성자 ○○○

저는 동물보호시민단체의 활동가입니다. 오늘 저희 단체로 인천 ○○구청 지역 내에서 개 도살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어떤 시민분의 전화를 받고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을 연락하였습니다. 제보자는 ○○구청에 상습적으로 개 도살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 대해 ○○구청 공무원인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알렸더니 개 도살이 합법이라며 나서주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제가 직접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전화했을 때에도 ‘그럼 개 도살이 불법이냐’고 반문하셨고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전기충격의 방법을 사용하면 개도살은 합법’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개도살을 신고하고 대응을 요청하는 시민의 제보, 그리고 이에 따른 활동가 문의에 대해 오히려 ‘개도살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신 동물보호감시원분의 행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동물보호감시원이라면 동물학대를 막고 예방하여야 옳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에 대해 대뜸 개도살이 합법이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셨습니다. 대화 끝에 개 도살이 신고된 위치에 가보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이는 활동가의 기나긴 요청이 있던 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민원을 넣게 된 이유는 행정을 하시는 동물보호감시원께서 앞으로도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개도살이 합법’이라는 식으로 응대하시면 안되겠기에 시정을 요청드리는 차원에서입니다. 개 도살은 전기충격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조차 합법이 아닙니다. 동물보호감시원께서는 동물보호법 제10조를 들어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죽이면 합법이라는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께서 왜 이토록 개 도살이 합법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전살이 언급된 부분인 2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말씀드리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나와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동물보호감시원께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는 개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 개 도살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가축엔 개가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신고 받은 개 도살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전염병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상습적인 개 도살이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개가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동물보호감시원께서 개 도살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셔서 민원을 넣기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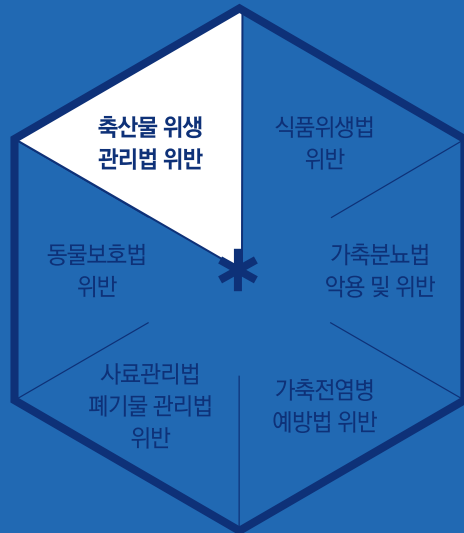
개 도살은 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동물보호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께서 억지 주장을 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  
날짜 2016-03-11  
작성자 ○○○

1.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개의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도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다른 사람이 보는 앞이나 다른 동물이 보는 가운데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의 경우를 제외한 도살은 동물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도축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축산물 위생관리와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다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농축수산과 0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 식육으로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 개

[목적자 증언]

**개농장 고발 민원 :** "경기도 모처에 6,000마리 규모의 개농장이 생긴다. 그 안에서 도살도 한다. 판넬로 막아 놓아 외부에서 보면 공장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대규모 도축장도 있다. 나도 개농장을 하지만 이진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사람은 마을발전기금도 거액 냈고, 00시에 정치자금도 낸 거 같다. 00시에서 정식으로 건축물 허가도 냈다고 하더라. 개농장 업주들 모임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개도살 고발 민원 :** "고양시 00동이다. 주택가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개를 도살하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개들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잠시후 개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얼마후 핏물이 흘러나오곤 한다. 개들도 자기들이 죽는 줄 아는지 처절하게 안꺼려 들어가려고 버틴다. 대체 내가 왜 이런 끔찍한 걸 보고 살아야 되며, 왜 처벌하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다 불법 아닌가?"

[축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 1. 현황

- 개농장주들끼리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개값을 상인과 줄다리기하며 조절
- 개농장에서 직접 도살하여 유통하거나 상인에게 팔려 불법도살장 또는 개시장으로 이동 후 도살
- 불법 도살된 개들의 사체는 '농장 직송' 또는 '토종개' 등의 이름을 걸고 보신탕 집에서 판매됨
- 살아있는 개를 고르면 직접 도살해주거나 도살 후 지육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며 키우던 자신의 개를 도살 의뢰하기도 함

### 2.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살, 식육으로의 유통이 불가능' 한 동물

가축의 개량 증식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농가 소득 증대 등 가축의 사육에 관한 법률인 축산법에 의하면 '개' 는 가축에 해당한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삭제 <2013.4.11> 3.꿀벌 4.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사슴 2.토끼 3.칠면조 4.거위 5.메추리 6.꿩 7.당나귀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충청남도 고시 제2011-156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소와 말 제외)의 "자가소비 도살, 처리 허용지역(충청남도고시 제2003-11호, 2003. 2.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

**자가소비 도살, 처리 허용지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벽지 등 도축장 이용이 심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자가소비 도살, 처리" 허용지역을 설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및 허용) 자가소비 도살, 처리 허용 가축은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에 한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허용지역) 별표에 의함

제4조(준용)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기간) 이 고시의 홍보기간은 2011. 5. 31까지로 한다.

충청남도의 자가소비 도살, 처리 허용지역 고시를 보자. 이 고시의 제정 목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 벽지 등 도축장 이용이 심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자가소비 도살, 처리” 허용지역을 설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이때 도살이 허용되는 가축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 중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은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아예 가축에 해당하지도 않는 개의 경우 ‘허가 받은 도살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모든 개도살은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도살인 것이다. ㉓

㉓ 자가도축 허용 고시에 대한 오해와 해설 : 일부 가축에 대한 자가도축 허용 고시와 개도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즉 자가도축 허용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 허가받은 도살장에서 도살해야 하나, 그 ‘작업장’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와는 무관한 조문이다. 참고로 자가도축 고시는 소, 말, 양 등을 제외하여 고시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에 한해 ‘도축장 이용이 심히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주민들에게 지리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는 가축의 도살 및 식육의 유통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은 아니다. 따라서 개를 축산법에 의하여 사육할 수는 있어도, 개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개가 가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가 가축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은 다시 말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를 사육하는 것까지는 허용되나, 도살하여 개를 유통시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 3. 결론

개도살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 를 도축할 수 있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받은 작업장’ 이란 당연히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농장, 재래시장, 흑염소 도축장, 무허가 도축장, 개인 주택 등에서 개들은 대규모 마구잡이로 빈번히 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경우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이다.

####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1.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위와 같은 민원 답변은 ‘개’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아무런 규제나 제한 없이 도살할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법해석이다.

즉, 어떤 법률이 규율대상과 그에 대한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때, 규율대상에서 빠져 있는 개체(대상)의 경우 그 개체(대상)에 대한 행위가 1. 아무런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지 혹은 2. 역시 행위제한의 적용을 받아 해당 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 반할 경우 이를 위법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이다. 이때 후자, 즉 역시 행위제한의 적용을 받아 해당 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 반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이다(대법원 1999.8.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해석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서 ‘개’ 가 빠져 있으므로, 개를 도살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도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 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살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청 담당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예) 개나 고양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리대상이 아니다’ 라고 민원에 대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도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도축은 위법’ 이라고 답변했어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잘못된 민원 대응 사례

- 경기도 ○○시 동물보호감시원의 민원 사례

개의 경우 ‘허가받은 도살장’ 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모든 개도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7조 제1항 위반. 허가 받지 않은 도살장에서 상습적으로 대규모 도살을 하여 불법 축산물로 유통시키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법률을 소극적으로 잘못 해석함.

답변

주관부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날짜 2015-07-06  
작성자 ○○○

- 우리시 동물보호와 축산물 위생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축산물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의 지육, 정육, 내장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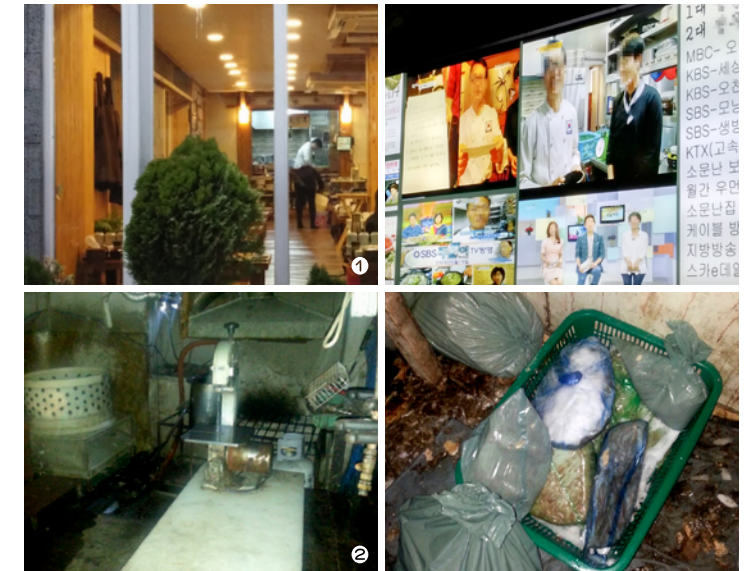
대형 유명 보신탕집 '겉만 번지르르' 주방에 바퀴벌레 '우글우글'  
경향신문 / 2008.07.17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기자에게 "객실도 깨끗하고 음식 가격도 비싼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찾는 곳"이라며 "(주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해도 너무한다. 손님들이 저런 광경을 직접 본다면 음식을 먹으러 오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엔 영업정지가 ...



## 1. 현황

- 시중에는 대통령 단골 유명 보신탕집, 3대를 이어 영업 중인 개고기 퓨전 요리가 나오는 고급 보신탕집에 더하여 보신탕집 체인도 존재
- 재래 개시장에서 직접 도살한 개들을 철장에 얹어 놓거나, 광주리에 도살한 개를 담아와 판매해도 불법 식품으로 단속하지 않음
- 사람을 따르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개의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도살과 병행하여 산발적 소규모 개도살 및 식품으로의 이용 발생 (예) 복날 마을잔치, 마을회관 개고기 파티, 성당 바자회에서의 개고기 판매 등)



- ① 고급 개고기 식당의 모습이다. 이런 식당에 납품되는 개들은 어디에서 올까?
- ② 전문적으로 개를 도살하던 업자의 주택가 지하 비밀도살장의 모습이다. 도살후 아무렇게나 버려진 개들의 사체 일부가 나뉘구는 마당 한편 냉동고안에 보신탕집 납품용 개 사체가 비닐에 담겨있다.



## 2.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2-1)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불결한 불법 도축과 지육 전시 과정에서의 오염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식육은 위생 관리가 안된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 검사를 받은 식육만을 유통하게 하는 것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제정 취지이자 기능이다. 축산물의 경우 발생할 위해의 정도와 규모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축장 등 모든 축산물 작업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검사 기준 없이 위법한 과정을 거쳐 도축된 개의 ‘사체 또는 지육’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무허가 도살장에서 불법적으로 도살되어 생산된 고기이므로 불법 도축 및 유통 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 미생물 등이 검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2-2)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 ▶ 시행규칙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브루셀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당됨)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 개농장이나 반려견 번식장의 소위 폐견, 유기견들의 불법 유통의 결과 얻어지는 개의 지육 또는 사체의 질병 감염 또는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 농후

병든 유기동물이나 번식장에서 질병에 이환되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소위 폐견들, 산발적으로 극단적 방치상태로 키워져 각종 질병에 이환된 채 도살되어 유통되는 개들 그리고 개농장에서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해요소들 또한 심각하다. 특히 개들을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대규모로 밀집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들의 브루셀라 등 질병 감염 위험, 음식쓰레기 급여에 따른 인수공통 전염병 우려, 항생제 남용에 의한 잔류 항생제, 질병으로 죽은 닭이나 돼지 사체 등 축산 폐기물을 무단 공급함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나 기타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 등이 상존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위해 발생시 사후 관리도 불가능하다. 병든 개가 도살되어 식품으로 유통될 경우 문제 발생 지점을 알 수 없고, 피해를 관리할 기술적·경험적 방법과 국제적인 관리 사례 등도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농장 개들에게는 닭내장이나 머리와 같은 축산폐기물의 상시 급여는 물론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돼지나 닭이 통째로 급여되기도 한다.



### 3.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추가에 따른 추가 법률 위반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영업자가 사용해서는 안된다.

### 4. 결론

비위생적인 식육 유통에 의한 국민 건강 위험을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여러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 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은 치명적 질병의 감염과 확산을 초래하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정규 축산물이 아니므로,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거, 도살한 개를 통째 또는 지육 상태로 운반·전시·판매하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특히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식육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모든 식품접객업소 보신탕집들은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3.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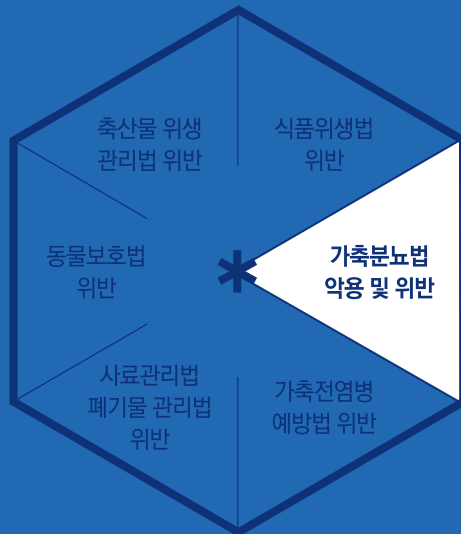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악용

### 1. 현황

#### 신규 대형 개농장 설립, 과연 적법한가?

경북 김천에 1,000여 마리 사육규모의 신규 개농장이 건축 허가를 신청, 이 개농장은 이미 마을에서 십수년간 대규모 개농장을 운영해오다 다른 곳에 추가로 2호점을 내리는 상황. 기존 개농장으로 인한 피해를 익히 알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개농장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규 개농장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중. 김천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만 갖추면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 면적 60㎡ 이상의 개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법적 실효성 및 단속 실적은 거의 없으며 '분뇨 처리시설 신고'가 마치 개농장 자체가 합법인 양 잘못 인식 되고 있음
- 심상정 의원실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경북 김천, 성주에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신고된 개농장만 141곳이고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도 250마리가 넘음(다수 개농장은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
-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후 추가 정기 점검이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대부분의 개농장에서는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오염 및 민원 유발

### 2. 개가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이 된 이유

- 개농장의 분뇨 관리를 위한 법적 취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 ▶ 시행규칙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짐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가축분뇨법상 가축에는 개가 포함된다.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소, 젖소, 말, 닭 또는 오리의 경우 면적이 특정 정도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개 사육시설은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아니다.

한편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배출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약 18평) 이상이면 배출시설을 ‘신고’ 해야 한다.

개의 대량사육이 금지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개의 분(糞)·요(尿)나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이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일단 가축분뇨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 ▶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에는 > 개 사육시설 60㎡ 로 나와 있음



### 3. 법적 실효성의 문제

- 가축분뇨법의 분뇨처리 시설 신고 대상 동물에 ‘개’를 추가한 이후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

배출시설 설치후 신고하고 난 뒤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가축분뇨법 제10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의 각 호는 그러한 의무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경북 ○○시에 신규 설립 중인 대규모 개농장의 모습. 개들은 평생을 좁은 철망 뜰 위에서 키워져 도살된다.

법 제49조 제4호에 따르면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 제50조 제4호에 따르면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법 제50조 제5호에 따라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동물단체로 민원이 제기되는 거의 모든 개농장, 현장에서 조사된 모든 식용 목적의 개농장에서 분뇨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 개농장주들 사이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농장이라 추앙 받는 대규모 개농장 한 곳을 조사한 결과, 어느 열악한 개농장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오줌과 똥이 그대로 방치되어 고여 있었고 주변 논에는 녹조가 발생되어 있었다.



거대한 개농장과 맞닿은 논에 아직 추운 계절임에도 진한 녹조가 끼어 있다.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4.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5.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결론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로 개농장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는가?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킴으로써, 축산법에 의거하여 사육되는 개들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려 했던 입법자의 의도는 일부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 이후 법에 따른 철저한 단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사육장의 분뇨처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대규모 개농장 확산과 운영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현장 조사 결과 나타난 식용 개농장의 가축분뇨 처리 미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개농장이 가축분뇨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런 행정 집행 사례는 거의 없다. 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개농장주 사이에서는 가축분뇨 시설 신고를 하면 해당 개농장은 합법적인 개농장이며 그밖의 모든 부분에 있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건축 허가 및 식용개 사육이 합법이라는 빌미로 역이용되었다.

개농장의 목적이 불법적 도살과 식육 유통임은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다른 모든 측면의 합법성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내려지는 건축허가로 인해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행정청의 적극적인 단속 및 개선의지 부재로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개농장의 목적이 불법적 도살 및 불법적 식육유통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개고기의 합법성과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분뇨처리 시설’ 만의 설치로 개농장 건축을 허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개농장’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 개농장의 목적, 필요성, 타당성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분뇨처리 시설’ 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려주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방역의 총체적 와해와 위험 부과

### 1. 현황

[문의전화]

조류 독감 살처분 중 발견된 뜰장 속 개들의 운명 문의 : "살처분을 위해 포크레인이 구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인데, 비닐하우스 안 뜰장에 여러 마리의 개들이 보인다. 이 개들을 살처분 해 묻기 위한 구덩이였을까요? 이 개들은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 한 마리를 검사하지 않고 돼지들도 그냥 묻어 버리는데... 이 개들에 대해 좀 알아봐 달라..어차피 식용으로 도살될 개들이니 살처분 되는 게 나을까요?"

[기사]

김제에 이어 고창서도 구제역 확진 ... 사료가 감염경로(?)

뉴스시스 / 2016.01.14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이 농가의 경우 9800마리의 돼지를 사육중이며 약 80마리가 발굽수포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바 있다.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오면서 도는 현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



- 도심에서 개들을 전시·도살하는 성남 모란장에서 2015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으로써, 개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축산동물처럼 대규모 사육·도살하는 행위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전면 부상함
- 개를 대규모로 사육하며 폐사한 닭이나 돼지 등을 개의 먹이로 불법 급여하는 상황은 치명적 전염병이 중간 장벽을 넘어 반려동물인 개를 통해 인간으로 올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 내재
- 이미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개에게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염병 발생 시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동물인 개의 살처분은 명문화하면서, 근본적으로 '개'의 농장동물화를 억제하지는 않고 있어 질병 관리 측면에서 고도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이율배반적 축산정책





## 2. ‘개’를 닭, 돼지와 함께 대규모 살처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한국

### 2-1)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종식되지 않은 채 공장식 축산과 같은 밀집형 사육시설에서 더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장동물들을 십만, 백만 마리 단위로 일거에 살처분하는 이유는 동종의 동물간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바이러스가 중간 장벽을 넘어 다른 동물, 나아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실제로 방역 실패로 인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감염돼 사망했다. 그런데 사람 곁에서 가까이 사는 고양이와 개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감수성 동물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2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의 이동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1.고양이 2.타조 3.메추리 4.꿩 5.기러기 6.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4. 제19조 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20조(살처분 명령)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1조(도태의 권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고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5.12.2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4호, 2015.12.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감수성동물”이라 함은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타조·꿩·기러기·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고양이·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

1.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타조·꿩·기러기·돼지·개·고양이 등 가축
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
4. 1호 내지 3호까지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의 생산물
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물건·차량·사람

제17조(살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는 정밀

한편 법 제20조(살처분 명령) 제3항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배회하는 개, 고양이 등을 소유자 부담으로 억류시키거나 살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개’의 집단 사육

그런데 정작 문제는 배회하는 개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사육되는 개농장의 개들도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에 따르면 발생 농장 내 개, 고양이, 돼지의 경우는 정밀검사 실시후 항원 양성인 경우 살처분 대상이 된다. 이때 만약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수심, 혹은 수백 마리 이상 키우고 있다면 이 개들 전수에 대한 항원 정밀검사 실시는 가능한 것인가? 또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규모로 집단 사육되는 개들을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개체별 격리하고 이후 살처분 대상 선별 및 대상 개체만 살처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km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고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축사의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의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 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6.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폐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살처분 등) 제1항에 따르면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포함 적용대상 동물은 결국 살처분 되어야 한다. 게다가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검역본부장 혹은 시·도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km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만약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옆에 1,000마리 규모의 개농장이 있다면, 이 개들의 살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개농장 밖에서 개도살이 이뤄지는 재래시장과 같은 곳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시에는 마찬가지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축사의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각 항목에 따라 재래시장에 있는 개들에 대해서도 감수성 동물로서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 3. 결론

공장식 축산이 야기한 대규모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제어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그 피해를 줄이는 수준의 방역이 가능할 뿐이다. 과밀하고 비위생적 상태의 공장식 축산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염병 발생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발병이라는 긴급상황에서도 전국 곳곳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산재한 개농장은 전염병 대응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해치는 주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개가 적용대상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0조에 따르면 개농장도 철저한 소독과 이동 제한 조치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독설비는 50㎡ 이상 가축사육시설이라면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갖춰 놓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60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상태에서 불법 영업에 길들여진 개농장이 까다로운 방역 규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염병 발생시 개농장은 전체 방역망에 치명적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방역상의 문제는 개농장 자체가 가지는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개’를 닭, 돼지 등 농장동물 가까이에서 대량 공장식 사육하고 바이러스 종간 이동의 시험관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반려동물인 ‘개’의 대량 살처분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개를 살처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감수성 동물로서 전염병 확산 우려 위험을 가진 개농장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결정적 이유이자 개농장 철폐의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미봉책으로 개들을 살처분함으로써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종의 동물들을 개와 함께 전시·진열하며 즉석 도살하는 재래시장의 경우도 개의 살처분 근거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개식용 거래 및 도살을 원천 금지하여 근본적 방역을 수행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5.6.22.>

1. 가축사육시설(50㎡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3.8.13., 2015.6.22.>

###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5.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4. 제1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 4의2. 제17조의2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 4의3. 제17조의2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 사료관리법/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영업 이익 극대화

[목적자 증언]

개농장 관계자의 증언 - 개들에게 항생제를 탄 음식쓰레기를 먹이는 개농장  
"개들에게 사료를 먹이는 개농장은 없습니다. 상해서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음식쓰레기에 하얀색 봉지 항생제를 섞어 먹이는데,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은 음식쓰레기를 끓여 먹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항생제만 섞어 먹이는 경우도 많아요. 개를 먹이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음식쓰레기를 가져다 먹일 수 있게 연결해 줍니다. 도계장에서 버려지는 닭 내장과 닭 머리도 도계장에서 바로 렌더링 하지 않는 한 거의 다 개농장에서 가져다 먹여요."

###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 1. 현황

- 모든 개농장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개들에게 일상적으로 급여
- 개농장의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은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악취와 해충 유발 등으로 심각한 주민 환경 위해 유발
- 행정관료들은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와 축산폐기물 급여를 제어하기는 커녕 개농장주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농장의 수익 확대에 기여하고 개농장의 확산 초래
- 음식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대신 개들을 음식쓰레기 처리에 이용하는 등 동물학대를 조장
- 축산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생 관리 체계를 무너뜨림

### 2. 폐기물 관리법 위반 -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와 운반자에 대한 적용 규정

통상적으로 식용 개농장에서는 개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남은 음식물' 개념과도 다른 쓰레기일 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서 급여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의무자를 관할구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그런데 법 제15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즉, 개농장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는 자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는 스스로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허가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게 하여 이를 개농장주에게 넘기거나, 스스로 넘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015.1.20.>

1의2.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한 음식점주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한 자 역시 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음식물쓰레기 운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 3. 사료관리법 위반 -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먹이는 개농장주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남은 음식물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제1항에서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다. 즉 남은 음식물사료도 제조업자가 정부 소속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 감독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 [사료관리법]

#####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 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①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하며, 원료·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 ▶ 시행령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 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 [폐기물 관리법]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시행규칙

- [별표 16] <개정 2016. 4. 28.>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 제2항 관련)

12.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5의2 제22호나목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표 제29호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별표 16에서 말하는 재활용 방법의 구체적인 기준 [별표 5-2]의 29호

29.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쌀겨 등을 이용하여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가.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폐기물 중 닭 내장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정한 과정을 거쳐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폐기물은 처리업자 또는 개농장주에 의해 수거되어 개들에게 급여되고 있다.





한편 남은음식물사료의 경우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고시(사료관리법 고시 [별표 9]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제8조 제6항 관련))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해야 하며 가열 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은음식물사료는 반드시 발효 등 가공 전에 가열처리해야 하며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은 0.5%미만, 셀레늄 함량은 2ppm 이하여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고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사료 관리법 고시[별표 16] <신설 2014.12.8., 2015.8.21.>)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 제1항 관련))에 의해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가 ppb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거나 대충 가열해 주는 형태와는 아주 다르다. 현실적으로 이런 기준의 준수를 기대하거나 행정청에 의해 점검되거나 시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 고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남은음식물사료(edible food waste, restaurant food waste)

1) 정의 : 대형요식업소, 기업체 부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 사료화 가능부분을 분리 수거하여 이물질제거시설을 갖춘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시설에서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된 사료를 말하며, 최종제품에서 살모넬라(D그룹)가 검출되면 안 된다. 식품가공부산물류와는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되어 있다.

2) 영양정보 : 남은 음식물 수거 지역, 수거 시기, 발생 형태 등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일정하지 않다. 원물상태의 대략적인 영양조성을 보면 수분 77%, 조단백질 5.0%, 조지방 1.9%, 조섬유 1.6%, 조회분 2.4% 이다.

3) 고려사항 : 남은음식물사료는 누구든지 반추동물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남은음식물사료는 반드시 발효 등 가공 전에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강피류, 박류, 보존제, 생균제, 식품가공부산물류 또는 향미제를 혼합물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합된 원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셀레늄 함량이 2ppm 이하이어야 한다.



[ 사료관리법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3.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은음식물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도 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결론

개농장의 개들도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개들과 소화기관 및 신체 구조가 동일한 똑같은 개다. 그런데 반려동물용 사료에 적용하는 제품 안전 기준이나 원료 규격 등이 개농장 개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개농장 개들에게는 음식쓰레기를 급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사람의 타액, 이썩시개, 담뱃재, 가래침과 코가 묻은 휴지, 손을 닦은 물티슈, 기타 오물로 범벅이 된 음식쓰레기에는 개들이 먹어선 안되는 양파와 소금, 고춧가루 등 온갖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음식쓰레기를 30분 끓여 다시 급냉 시켜 개들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행정관이 이를 점검해 온 바도 없다.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는 그 자체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행위이며,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에 따른 오수·냄새 2차 폐기물 투기 등 환경 위해 및 해충의 발생과 번식에 의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음식쓰레기로 건강 유지가 안될 수밖에 없는 개들에게 개농장주들은 폐기물 축산물, 즉 닭 내장이나 닭머리 등을 먹인다.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닭머리 등 폐기물은 도계장에서 바로 렌더링 되어 단미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정식 반출되어 기준에 의해 단미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생적으로 폐기되어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바로 개들에게 급여되고 있는 것이다.

축산폐기물의 급여는 이를 옮기는 과정과 급여하는 과정, 급여 받은 이후 개들의 몸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질병 발생 및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개농장에서 급여되고 남은 폐기물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의 부분이다. 불법 개농장이 난립된 상황을 고려하면, 축산폐기물로 인한 질병 등 위해 발생시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을지조차 알 수 없다.

동물의 도축 후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집행으로 얻고자 한 소기의 결과, 즉 위생적인 가축 폐기물 관리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개농장 철장 앞에 개들에게 먹이기 위한 출처 불명의 돼지 사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 민원

#### 지방자치단체 담당관의 잘못된 민원 대응 사례

- 경북 ○○시 축산환경과 공무원의 민원 사례

음식물 폐기물을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급여한 것으로 보이는 개농장에 사실 확인과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는 사적 의사 표현으로 민원 답변을 갈음함.

제목  
날짜 2015.04  
작성자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입니다.

감문로 000-00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가축에게 음식물폐기물을 제공 여부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법조, 상세한 위반내용, 처분법조, 조치계획, 대호번호(일자)를 알려 주시고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현장사진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송부바랍니다.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 답변

담당부서 경북 ○○시 환경관리과  
날짜 2015.04  
작성자 ○○○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식용 불법화가 될 때까지 쉽 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의 뿌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에 만든 <아름팜>입니다. 아름답은 이 땅에 아직 동물보호운동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시절에 사회 전반의 낙후된 생명의를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에 주력해왔으며, 2006년에 비영리 시민단체 'KARA'로 등록되었고, 2010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재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KARA는 지난 15년간 사설 동물보호소 지원, 유기동물 입양, 개식용·모피·동물실험 등과 관련한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 채식 캠페인,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 동물보호 무크지 <숨> 발간, 동물사랑교과서<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발간과 각종 문화·교육활동 등을 전개해 왔으며, 농장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보호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ARA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